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안주영 의원 외 1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본 조례 개정안은

- 통장의 위촉에 있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통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통장들이 지역실정의 정확한 파악을 가능케 하므로써 동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통장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어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유문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만, 개정안 제5조 제4항 제5호중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는 공무원의 정년퇴직과 맞추어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로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유됩니다.

2005. 5. 6

보고자 : 김 찬 재